



## 학술활동지원 지침

규정번호	3-1-44
제정일자	2007.04.01
개정일자	2017.09.01
개정번호	Ver.6 총페이지 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소속 교수들의 학술연구 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방법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전임교원임용규칙」에 의해 본 대학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일반교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대해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를 지원한다.

② 긴급투고 시에는 해당 학회 규정에 명시된 일반투고 심사료 및 논문 게재료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③ 제1항의 ‘저명 학술지’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와 SCI급 학술지(SCI, SSCI, A&HC, SCI-E, SCOPUS, Index Medicis 등재 학술지)를 말한다.

**제4조(지원신청조건)** ① 교내 연구비의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에 한한다.

② 신청자 본인이 저자로서 본 대학 소속임이 명시되어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③ 공동저자인 경우는 신청자가 제1저자(first author)나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한다.

**제5조(신청기간)** ①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게재되거나 게재확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다음해 1월에 산업기술연구소장이 신청기간을 정하고 이를 공고하여 신청접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시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 중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7월에 산업기술연구소장이 신청기간을 정하고 공고하여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신청)** ① 지원을 원하는 일반교원은 제5조에 의해 공고된 신청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산업기술연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 지원 신청서
2.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 영수증
3. 논문 별쇄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1부. 단,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논문이 게재된 후에 논문 별쇄본을 산업기술연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게재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저명 학술지임을 증빙하는 자료

**제7조(지원비 지급)**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청접수 결과 신청금액의 합계가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산업기술연구소 운영

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선정된 논문에 한해 지급한다.

**제8조(개정절차)** 이 지침은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

**부 칙**

- (1) **(개정)** 이 지침의 개정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